#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송옥주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722

발의연월일: 2020. 6. 19.

발 의 자: 송옥주·권인숙·서삼석

박 정・임종성・안호영

박찬대 • 정춘숙 • 유동수

박용진 의원(10인)

### 제안이유

주거지에서 1급 발암물질 라돈이 고농도로 측정되는 등의 문제로 사회적 갈등이 심화되고 있음. 외국의 경우, 주택거래 체결 전 라돈농도와 같은 실내공기질 측정값을 주택 판매자가 제공하도록 의무화하고 있으나 우리나라는 관련 법·제도가 미비한 상황임. 현행 「실내공기질 관리법」은 시공자가 라돈농도를 측정해 입주민에 알리도록 하고 있으나, 이는 신축 공동주택에 한하여 최초 입주 시기에만 적용하는 한계가 있음. 이에 우리나라에서도 주택거래 시 라돈 농도 등 실내공기질 측정값 등의 정보를 제공하도록 할 필요가 있으나 민법의 적용을 받는 현행 주택거래 현실을 고려할 때 모든 주택거래에 적용하기 어려운 점을 고려하여, 공공 영역에 있는 공공주택부터라도 임대차계약 체결 시 입주민에게 실내공기질 측정결과 등을 정확히 알리도록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공동주택을 건설하여 공공임대주택으로 공급한 공공주택사업자가임대차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 해당 주택의 실내공기질 측정결과등을 임차인에게 설명하고 확인받도록 함으로써 공공임대주택의 실내공기질이 적정하게 관리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49조의2제6항·제7항 및 제60조제1항제1호의2 신설).

#### 법률 제 호

##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9조의2에 제6항 및 제7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⑥ 공동주택을 건설하여 공공임대주택으로 공급한 공공주택사업자가 제1항에 따라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 해당 공공임대주택의 실내공기질 측정결과 등 실내공기질 관리와 관련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임차인에게 미리 설명하고 이를 확인받아야 한다.
- ⑦ 제6항에 따른 설명 및 확인의 방법,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60조제1항에 제1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의2. 제49조의2제6항을 위반하여 실내공기질 측정결과 등을 임차인 에게 설명하지 아니하거나 이를 확인받지 아니한 자

##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공공임대주택의 표준임대차계약서 등에 관한 적용례) 제49조의2

제6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 신·구조문대비표

| 현 행                 | 개 정 안                 |
|---------------------|-----------------------|
| 제49조의2(공공임대주택의 표준   | 제49조의2(공공임대주택의 표준     |
| 임대차계약서 등) ① ~ ⑤ (생  | 임대차계약서 등) ① ~ ⑤ (현    |
| 략)                  | 행과 같음)                |
| <u>&lt;신 설&gt;</u>  | ⑥ 공동주택을 건설하여 공공       |
|                     | 임대주택으로 공급한 공공주택       |
|                     | 사업자가 제1항에 따라 임대차      |
|                     | 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 해당       |
|                     | 공공임대주택의 실내공기질 측       |
|                     | 정결과 등 실내공기질 관리와       |
|                     | 관련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
|                     | 사항을 임차인에게 미리 설명       |
|                     | 하고 이를 확인받아야 한다.       |
| <u> &lt;신 설&gt;</u> | ⑦ 제6항에 따른 설명 및 확인     |
|                     | 의 방법, 절차 등에 필요한 사     |
|                     | <u>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u> |
| 제60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 제60조(과태료) ①           |
|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                       |
| 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                       |
| 부과한다.               |                       |
| 1. (생 략)            | 1. (현행과 같음)           |
| <u>&lt;신 설&gt;</u>  | 1의2. 제49조의2제6항을 위반하   |
|                     | 여 실내공기질 측정결과 등을       |
|                     | 임차인에게 설명하지 아니하        |

|               | 거나 이를 확인받지 아니한   |
|---------------|------------------|
|               | <u>자</u>         |
| 2. ~ 6. (생 략) | 2. ~ 6. (현행과 같음) |
| ② (생 략)       | ② (현행과 같음)       |